

기간제근로자(통계조사관) 채용 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통계조사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모집 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 예정 기간	채용인원	
			일반	장애인
통계조사관 (기간제)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 수행, 조사표 입력, 내용 검토 등 (‘26.10.1.~12.11.)	‘26. 10. 1. ~ 12. 17.	16명	1명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 수행, 조사표 입력, 내용 검토 등 (‘26.11.2.~12.17.) * 중복되는 기간은 2개 조사업무 동시 수행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사후 검토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내용 검토, 조사표 정리 등	‘26. 10. 1. ~ 12. 24.	2명	-
	통계조사 보조/지원 조사표 수신 관리 및 보조/지원업무 등	‘26. 10. 1. ~ 12. 24.	-	1명

※ 채용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가능하며, 일반 전형 및 장애인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II 응시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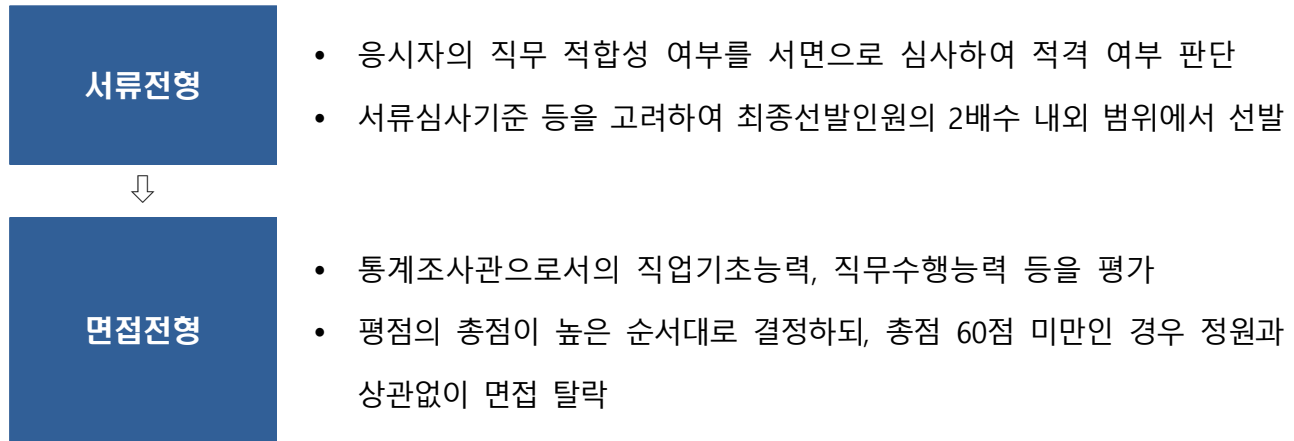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전공, 병역	·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장애인 전형 제외) · 직무 관련 활용 경험 및 자격보유자(통계 또는 컴퓨터 활용 관련)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애인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III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 전형 일정

전형 일정	일 시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6. 9. 4.(금) ~ 9. 16.(수) 18:00까지	•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홈페이지 및 고용24 공고 • 접수방법: 고용24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 지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만 유효) ※ 우편, 이메일, 방문 제출 등 불가 ※ 고용24(https://www.work24.go.kr) 개인회원 로그인 → 좌측 상단 「채용정보」 → 「일자리 찾기」 → 「e-채용마당」 →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통계조사관 선택 → 하단 「e-채용마당 입사지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9. 18.(금)	•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6. 9. 22.(화) (예정)	•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26. 9. 28.(월) (예정)	•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
-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IV 우대사항

○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교육사항	- 통계조사 관련 학교 교과목 또는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교육 이수자 - 직업교육은 최소 8시간 이상 수강
경력사항	- 우리 부 및 타 통계조사 경력자 - 통계조사 관련 경력 기재 시, 조사별로 재직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자격사항	- 통계 또는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사회조사분석사, MOS, ITQ, 엑셀, 정보처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 MOS, ITQ 등 과목이 구분되는 자격증은 해당 과목 명시

○ 가점 부여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저소득층: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만점의 5%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일반전형)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만점의 5% 부여 (장애인전형)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만점의 5%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V

제출 서류

- 원서접수 기한 내에 **고용24 『e-채용마당』**을 통해 **응시원서**(NCS기반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온라인 접수**(**e-메일, 우편, 방문, 팩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한: **2026. 9. 4.(금) ~ 9. 16.(수) 18:00**

※ **수험번호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e-채용마당 지원서관리 > 수험번호

제출 서류	방 법
NCS 직무능력기반 국문 지원서 1부	『e-채용마당』 제출
경험·경력 기술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고용24 e-채용마당에 첨부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7]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처리 관련 교육(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통계 또는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입사지원서 상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 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VI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일급 78,560원, 식비 160,000원(만근 기준)** 등 ※ 출장 시 출장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근무장소 :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지역협력과 노동시장분석팀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훈령 제590호)」에 따름

V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붙임5]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채용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은 당 기관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조 사계획 변경 등의 경우 운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주시청 지역협력과 **노동시장분석팀(043-740-7413)**으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채용분야	통계 조사원	분류 체계	대분류	02. 경영·회계·사무
			중분류	01. 기획사무
			소분류	03. 마케팅
			세분류	03. 통계조사(능력단위 미개발 영역 포함)
기관 주요사업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고용보험 및 취업알선 사업과 근로감독, 산업안전 등 노동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임.			
주요업무	01. 통계조사 준비 02. 통계조사 실시 03. 통계자료 처리			
주요업무 수행내용	○ (통계조사 준비) 조사 대상에게 관련 협조 공문을 우편 발송하며, 사업체 정보나 조사내용에 대해 보안 조치를 유지함 ○ (통계조사 실시) 조사매뉴얼(조사요령서)를 기반으로 조사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적격 담당자 (설문해당자) 확보. 조사 대상의 협조 및 동의를 구해 조사 항목에 대한 고용노동 환경 정보 조사 실시 ○ (통계자료 처리) 응답된 설문항목 자료값에 기초하여 규정에 맞게 기록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설문 응답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전형방법	채용공고문 참고			
일반요건	연령	무관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 조사 용어에 대한 이해, 산업 및 직업 분류표 이해, 무응답 처리방법, 이상치 진단방법			
필요기술	○ 통계조사표에 대한 이해, 스프레드시트(엑셀) 활용 능력, 현장 방문조사 능력, 전화 대응 능력, 개방형 응답 범주화 능력, 이상치 판별 및 처리 능력, 원 자료 검토 능력, 입력시스템 사용 능력			
직무수행태도	○ 적극적인 학습의지, 업무처리에 대한 꼼꼼한 태도,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태도, 매너를 준수하려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객관적·균형적 태도, 조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 상호 독립적이고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범주화하려는 태도, 대량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는 태도			
필요자격	없음			
우대자격	채용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관리,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 ○ www.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 laborstat.moel.go.kr 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			

NCS 기반 입사지원서

채용분야 통계조사관(기간제)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대상 ☐ 비대상	장애여부	☐ 대상 ☐ 비대상	저소득층	☐ 대상 ☐ 비대상
----------------	---	------	---	------	---

2. 교육 사항

(1) 학교교육

*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오.

- [통계조사]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엑셀 및 시스템 입력 등 자료처리] 관련 학교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목 명	주 요 내 용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통계조사]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엑셀 및 시스템 입력 등 자료처리]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2.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직무관련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엑셀 및 시스템 입력 등 자료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기입해 하고 기타 사항을 추가로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활동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3.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고 공란 등으로 정확한 내용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자격증명	발급기관	등록번호	취득일자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극적 문제해결] 지금까지의 경험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 노력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2.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자세]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의사소통능력] 그동안의 경험 중 타인 혹은 타 조직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성과가 잘 도출된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자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귀중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보훈대상자 여부, 장애 여부, 경력단절여성 여부 ☐ 직무관련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 과목 ☐ 직무관련 경험·경력·자격 사항 ☐ 자기 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 교과목 이수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수집·이용목적) 고용노동통계조사관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지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교과목이수증명서 등 위 서류전형 합격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귀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